

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1. 5. 23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1년 5월 3일

· 회부일자 : 2001년 5월 3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88회 임시회

·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01. 5. 22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한 철 환)

가. 제안 이유

- 농지의 양어장 전용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양어장 적지판정서와 민원인이 수질분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

-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 의하여 양어장적지판정서 제출이 생략되었고 수질분석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기피하고 있으며
- '98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실적이 전혀 없어 이후부터는 시험의뢰자에게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응희)

-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는 내수면양식장의 적지 여부와 수산용수의 적합 여부를 의뢰하는 자에게 시험·조사 및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,
- 내수면양식장의 적지여부 및 수산용수의 적합 여부를 의뢰하려는 자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어 '98년 이후 지금까지 수수료 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, 본 조례폐지 이후는 수수료 징수 없이 시험·조사 및 분석결과를 알려줄 계

확이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◎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- 충청북도지사제출